##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형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8488

발의연월일: 2022. 11. 25.

발 의 자: 박형수 · 강기윤 · 김석기

김승수 · 김정재 · 김형동

양금희 • 유상범 • 정운천

조경태 · 지상호 의원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원회가 국정감사를 마쳤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의장은 그 보고서를 지체 없이 본회의에 보고하고, 국회는 국정감사의 결과를 본회의 의결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회의 국정감사 결과 처리 시한은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결과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정부 또는 해당기관의 결과 처리도 지연되고, 국회에서는 정부가 지적사항 에 대해 제대로 시정조치를 했는지 여부를 그 다음해 국정감사에서도 확인하기가 어려우며, 후속 안건 심사나 예산결산심사 시에도 국정감사 결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회의 국정감사 결과 처리 시한을 감사 종료 후 60일 이내로 규정하여 국정감사 결과가 향후 법안, 예결산심사 시 적극 반영되어

국정감사 제도의 이행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6조제2항).

#### 법률 제 호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1항제3호 중 "제16조제3항"을 "제16조제4항"으로 한다.
제1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② 국회가 제1항에 따라 감사 결과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감사 종료후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정감사 결과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국정감사에 대한 결과를 처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의2(국정감사정보시스템의	제12조의2(국정감사정보시스템의
구축 등) ① 국회는 다음 각	구축 등) ①
호의 내용을 포함한 감사의 과	
정 및 결과를 전자적 방식으로	
일반에 공개할 수 있다.	
1. • 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u>제16조제3항</u> 에 따른 정부 또	3. <u>제16조제4항</u>
는 해당 기관의 처리결과보	
卫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6조(감사 또는 조사 결과에	제16조(감사 또는 조사 결과에
대한 처리) ① (생 략)	대한 처리) ①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② 국회가 제1항에 따라 감사
	결과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감
	사 종료 후 60일 이내에 의결
	하여야 한다.
<u>②</u> (생 략)	<u>③</u> (현행 제2항과 같음)
<u>③</u> 정부 또는 해당 기관은 <u>제2</u>	<u>④</u>
<u>항</u> 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거나	<u>항</u>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	
리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④ 국회는 제3항에 따른 처리	⑤제4항

,
<u>⑥</u>
<u>제4항</u> -